

'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3. 12. 1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7 회 정기회

. 제 6 차 내무위원회 (1993. 12. 1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'93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,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였으나,
- 주요사업시행 변경과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 및 교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

○ 재산취득

. 농촌진흥원 저온저장고증축

- 청주시 북대동 261-1번지 농촌진흥원내 조립식 판넬구조 1동 52.8㎡

. 농촌진흥원 옥천포도시험장 안내 및 경비실신축

-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02-5번지 포도시험장내 세멘벽돌 스라브구조
1동 40.0㎡

○ 재산의 교환

. 교환 취득(경찰청소관재산) : 내역별첨

- 청주시 북대동 529-15번지의 24필지 39,783㎡

. 교환 처분(청주, 충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부지 및 건물) : 내역별첨

(토지) _____ 18필지 33,012㎡

┌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206-20의 4필지 24,514㎡

└ 충주시 가주동 629-15번지의 12필지 8,498㎡

(건물) _____ 15동 3,440.52㎡

┌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206-20의 4필지내 8동 2,064.18㎡

└ 충주시 가주동 1-7번지의 12필지내 7동 1,376.34㎡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윤 태 무)

충청북도 '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을 검토한바,

이는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주요사업시행변경등 재산의 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것으로

- 취득재산에 있어 농촌진흥원 저온저장고의 증축과 옥천포도시험장 안내 및 경비실 신축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식생활 향상과 건강을 위주로 하는 신선한 채소, 과실등의 선도유지 및 고품질화의 소비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볼때, 저장기술의 관점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 저장기술을 습득하기 위함과 옥천시설포도시험장 도난방지 및 시설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청주, 충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부지 18필지 및 건물 15동과 경찰청소관재산의 24필지에 대해 교환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찰청의 발족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운전면허업무가 경찰청소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청주, 충주자동차면허시험장의 공유재산을 경찰청소관 재산 24필지와 잡종재산의 교환취득 및 처분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. '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(안)